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람

기관의장

제869호 2012. 1. 16.(월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-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

회
람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- 65호

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. 1. 1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치매관리법」이 2011.08.04. 제정(시행 2012.02.05.)됨에 따라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었던 「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」가 각각 삭제·개정되어 일부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1조(목적) :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었던 「노인복지법」을 「치매관리법」으로 수정
- 제1조의2(정의) : 치매센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치매센터에 대해 명확히 규명
- 제3조(업무) : 치매조기검진과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
- 제6조(수탁자 선정) : ② 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”를 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”로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【참조 : 건강증진과장, 우편번호 : 404-190,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번지(심곡동 246-1번지), FAX : 560-2803】에게 제출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치매센터”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·지원·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치매주간보호를 포함한다.

제3조제3의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치매조기검진
5.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

제4조제1항 중 “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, 치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·학교법인·사회복지법인·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

고 인정되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의결을 거쳐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치매센터에서 제3조제4호와 제5호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한다.